

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5년 7월 9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제안이유

- 기존 종이책자로 배부하던 회의록을 전자회의록으로 대체하여 회의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도모코자 함
- 회의별(본회의, 상임위 등) 방청 허가권자를 규정하여 절차의 명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회의록 배부 방식 변경(안 제56조제1항)
 - (기존)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.
 - (개정)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, 이 경우 의원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.
- 방청의 허가 회의별 세분화(안 제88조)
 - (기존)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.
 - (개정) 본회의 방청은 의장이,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.

[붙임 1]

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, 이 경우 의원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.

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8조(방청의 허가) 본회의 방청은 의장이,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6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.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은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제88조(방청의 허가)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.</p>	<p>제56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, 이 경우 의원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8조(방청의 허가) 본회의 방청은 의장이,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.</p>

[붙임 2]

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성명(단체명): _____ (서명 또는 날인)

주 소 : _____

전 화 번 호 : _____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